【 표준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 특별약관 】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실손의료보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 별표14 및 별표15에서 정한 실손의료비 보장을 말하며, 이하「실손의료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에 적용합니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하는 「실손의료 보험계약」
2.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갱신이 도래하는 갱신형「실손의료 보험계약」을 말하며, 대상상품 및 대상담보는 이 특별약관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사항을 따릅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년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갱신 보험기간으로 하며, 차회 이후 갱신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료 할인대상 및 보험료 할인)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적용기간 동안 매회 납입되는 「실손의료 보험계약」의 보장보험료에 한하여 적용되며, 할인율은 이 특별약관의 사업방법서를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이하,「안정화 할인」이라 함) 외에 추가로 적용되고 있는 할인금액과 안정화 할인금액의 합계액이 대상상품의「실손의료보험계약」의 예정사업비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예정사업비를 한도로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예정사업비라 함은 대상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실손의료 보험계약」의 「예정사업비(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손해조사비)」또는 「예정사업비(신계약비, 유지비(납입중), 유지비(기타비용), 손해조사비)」를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을 따릅니다.